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라인상 권리침해행위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등〉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54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자 기준 확대 및 국내대리인 의무 강화(안 제32조의5 등)	4
2. 청소년 보호 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확대(안 제42조의3 제1항 등)	19
3. 불법정보의 범위 확대 및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사업자 의무(안 제44조의7 제1항 등)	28
4. 권리침해정보의 범위 확대 및 임시조치 의무화 등(안 제44조 등)	45
5. 서비스 접속 차단 및 과징금(안 제44조의12 등)	53
6. 국제협력(안 제62조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66
7. 벌칙(안 제74조 제2호 등)	6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4. 11. 21.

다. 회 부 일 : 2024. 1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하 “국외사업자”라 함)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국외사업자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사업자의 경우 큰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현행법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국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의 적용을 거부하며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침해, 저작권침해, 음란물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용자 권리 침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국내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워 국내사업자들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과징금, 광고금지가 가능하게 하여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외사업자에게 우리 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제44조의7, 제44조의11·제44조의12·제44조의13·제44조의14 신설 등).

주요내용

- 가. 국내대리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 등을 추가하여 현실화(안 제32조의5 등)
- 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불법정보유통방지 등 국내대리인의 의무 강화(안 제32조의5 등)
- 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유통금지 정보 및 불법정보에 개인정보 침해·저작권 침해 정보 추가(안 제44조, 제44조의7 등)
-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 피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위한 요건을 ‘소명’에서 ‘근거 첨부’로 완화(안 제44조의2)
- 마. 불법정보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정보가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에 광고 금지(안 제44조의7)
- 바. 이용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서비스 접

속 차단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마련(안 제44조의12 등)

사. 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회복 및 국외사업자의

제재조치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의무 부여(안 제62조)

Ⅲ. 검토의견

1.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자 기준 확대 및 국내대리인 의무 강화 (안 제32조의5 등)

가. 개정안 요지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지정의무자”)의 기준으로 ‘트래픽 양’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함(안 제32조의5 제1항).
 - 제42조의3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제1호)
 -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업무(제2호)
 - 제44조의11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업무(제3호)
- 지정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제2항).
 - 지정의무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제1호)
 - 지정의무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제2호)
- 지정의무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뿐만 아니라 지정의무자의 성명·주소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함(제3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지정의무자가 과징금·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대리인에게 이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제5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의무자가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지정의무자 또는 관련 기관에게 이용자 수, 매출액, 트래픽 양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제6항).
- 제32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76조 제1항 제2호의7 신설 및 제2항 제4호의3 삭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 제1항).
 - 제32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제2호의8)
 - 제32조의5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자(제2호의9)
 - 제32조의5 제6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2호의10)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 이용자 수, <u>매출액</u>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u>자</u>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u>매출액, 트래픽 양</u> ----- ----- --- <u>자(이하 “지정의무자”라 함</u>

현행	개정안
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3. (생략)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u><후단 신설></u> <u><신설></u> <u><신설></u>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는-----.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42조의3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u> <u>2의3.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업무</u> <u>2의4. 제44조의11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업무</u> 3. (현행과 같음) ② -----. <u>이 경우 지정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u> <u>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u> <u>1. 지정의무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u> <u>2. 지정의무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u> ③ -----.

현행	개정안
1. <u>국내대리인</u>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u>국내대리인</u>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1. <u>지정의무자와 국내대리인</u>---- ----- ----- 2. <u>지정의무자와 국내대리인</u>---- -----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을 <u>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지정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게 해당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u>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지정의무자 또는 관련 기관에게 이용자 수, 매출액,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76조(과태료) ① -----

현행	개정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6.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3. ~ 1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략) <u>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u> <u>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u> 4의4.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 ----- ----- -----. 1. ~ 2의6. (현행과 같음) <u>2의7.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u> <u>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u> <u>2의8. 제3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u> <u>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u> <u>2의9. 제3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u> <u>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u> <u>하지 아니한 자</u> <u>2의10. 제32조의5제6항을 위반</u> <u>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u>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u> 3. ~ 12. (현행과 같음) ②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u><삭제></u> 4의4. (현행과 같음) 4의5.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함¹⁾.
 - 국내대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대신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업무를 수행함.
- 이러한 국내대리인 제도는 이용자가 해외사업자에게도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 일부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 이 중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관되어, 현재는 자료제출 의무만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로 남아 있음.

1)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그런데 현행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국내대리인이 될 수 있어,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또한, 최근 해외 플랫폼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통 등 온라인상 범죄의 매개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과징금 등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등의 문제가 있어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를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의 기준으로 ‘트래픽 양’을 추가하여 보다 많은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②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업무 등을 추가하여 국내대리인이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며, ③ 지정의무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리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가 국내대리인이 되도록 하고, ④ 지정의무자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대리인에게 이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 참고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내대리인의 지정 기준으로 ‘트래픽 양’을 포함하고,
지정의무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²⁾.
- 다만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 기준 및 국내대리인 수행 업무 추가 (안 제32조의5 제1항)

- 첫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의 기준으로 ‘트래픽 양’을 추가하는 것이 개정안의 국내대리인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2)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있음.

- 개정안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청소년 보호 업무,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 유통방지 업무 등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서비스 이용자 수가 많아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자일수록 이러한 업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트래픽 양이 많은 자를 지정의무자로 추가하는 경우 단순히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용량이 클 뿐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는 적은 사업자도 지정의무자에 포함될 수 있는바, 이는 개정안에 따른 국내대리인 의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둘째, 개정안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업무가 현행법상 지정의무자 본인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³⁾.
- 또한, 동법 시행령은 ‘소속 임원 또는 소속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⁴⁾.

3)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4) 제35조의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이처럼 현행 법령이 청소년 보호 업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지정의무자 본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를 국내대리인의 업무로 동시에 규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본인과 국내대리인 모두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입장임.

-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 기준 추가) ① 트래픽 양은 데이터의 크기가 클 경우 이용자 수가 적어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지정의무자에 불필요한 사업자가 포함될 우려가 있고,

② 트래픽 양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법상 기준인 ‘매출액 및 이용자 수’를 통해 대상 사업자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국내대리인 수행 업무 추가) 현행 법령상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 임원

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대리인의 업무를 청소년 보호 업무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및 지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 기준 추가) 트래픽 양은 계절적 요인이나 특정 이벤트 등에 의해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할 수 있는 등 실효성 있는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임.

- (국내대리인 수행 업무 추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등의 업무는 모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원 내지 관련 부서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다른 법인격을 지닌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트래픽 양의 경우 데이터의 크기가 클 경우 이용 횟수가 적더라도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정한 책임에 대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 국내대리인의 과징금·과태료 연대 납부(안 제32조의5 제5항)

○ 첫째, 연대 납부가 대리제도의 취지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 대하여 발생하는 행위를 말함⁵⁾.

○ 이에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제4항은 국내대리인이 대리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음⁶⁾.

○ 따라서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의 납부 의무는 국내대리인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있으므로, 국내대리인에게 이를 연대 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민법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채무를 연대채무로 하고 있음⁷⁾.

○ 더욱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행위 중에는 개정안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도 다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국내대리인이 연대하여 과징금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5)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6)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7)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8)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연대 납부의 기준이 위반행위자 간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지 않은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안 제32조의5 제2항은 지정의무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하면서,
제5항에서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지정의무자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대리인이 이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일한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안 제32조의5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내대리인은 과징금 등을 연대 납부하여야 하고, 그 외 국내대리인은 연대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주체가 아닌 국내대리인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관리의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이므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연대 납부하도록 하는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임(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연대납부 규정이 위반주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취지를 왜곡할 수 있으며, 국내대리인의 기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기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타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입장임.
 - (지정의무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지정의무자의 성명·주소 공개)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지정의무자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해당 여부 확인의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이므로, 자료 요청의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타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임.

- (지정의무자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정보통신
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해당 여부 확인의 주체는 방송통신
위원회이므로, 자료 요청의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기타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지정의무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개정안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업자(Discord, 텀블러, 텔레그램 등)가
아닌 이미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 중인 대다수의
기업에게만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2. 청소년 보호 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확대(안 제42조의3 제1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청소년 보호 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자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자의 기준으로 ‘트래픽 양’을 추가함(안 제42조의3 제1항 등).
- 투명성 보고서의 내용에 불법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64조의5).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u>매출액</u>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 ----- <u>매출액, 트래픽 양</u>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 ----- -----

현행	개정안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u>매출액</u>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u>매출액</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 ⑦ (생략)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u>매출액</u>,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	----- ----- ----- ----- ---. -----<u>매출액 및 트래픽 양</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매출액 및 트래픽 양</u>-----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 ----- <u>매출액, 트래픽 양</u>----- ----- ----- -----

현행	개정안
되는 <u>불법촬영물등</u>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u>불법촬영물등</u>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u>책임자</u>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생략) ②·③ (생략)	-----<u>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u>----- ----- ----- ----- ----- 1. -----<u>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u>----- ----- ----- 2. <u>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전기통신사업법」</u>----- ----- ----- 3. <u>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전기통신사업법」</u>----- ----- ----- 4. -----<u>책임자 및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u>-----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트래픽 양을 의무대상자 기준으로 추가(안 제42조의3 제1항 등)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각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⁹⁾,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¹⁰⁾,

불법촬영물등(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¹¹⁾

- 9)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다. 정보보호 위협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⑤·⑥ (생략)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의 유통방지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¹²⁾.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자와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자 비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42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45조의3)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자 (제64조의5)
지정의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 면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수행 업무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 관리, 청소년 보호 계획 수립 등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실행 · 개선 등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업무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관한 사항

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12)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앞서 논의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무자와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자의 기준에도 ‘트래픽 양’을 추가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법상 의무자의 기준은 각 의무별 특성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트래픽 양을 기준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각 의무별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트래픽 양이 많은 자를 의무자로 추가하는 경우 단순히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용량이 클 뿐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는 적어 이용자 보호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의무자와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현행 제45조의3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를 면제하여 준 것은 영세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인데, 트래픽 양은 자산총액 및 매출액과 성격이 상이한 측면이 있음.
- 한편, 현행법상 투명성 보고서 작성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의 일환으로서 해당 의무자는 동법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자와 동일하므로¹³⁾,

13)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생략)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자의 기준으로 트래픽 양을 추가하려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자의 기준에도 트래픽 양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트래픽 양은 데이터의 크기가 클 경우 이용자 수가 적어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지정의무자에 불필요한 사업자가 포함될 우려가 있고,

② 트래픽 양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법상 기준인 ‘매출액 및 이용자 수’를 통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자와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자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법인(자회사, 지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해외사업자¹⁴⁾가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는 국내 대리인제도와는 달리 주로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¹⁵⁾, 해외사업자의 책임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14) 구글코리아,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15)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강화를 위한 규정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실익이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트래픽 양의 경우 데이터의 크기가 클
경우 이용 횟수가 적더라도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정한 책임에 대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 투명성 보고서의 내용에 불법정보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 64조의5 제1항)

- 현행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보고서로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개정안은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촬영물등뿐만 아니라 불법정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
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
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불법정보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¹⁶⁾.

- 다만, 불법촬영물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그 밖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함.
- 따라서 불법촬영물등은 불법정보에 포함되므로, 개정안의 ‘불법 촬영물등 및 불법정보’를 ‘불법정보’로 수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불법정보 투명성 보고서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 입장임.

16)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3. 불법정보의 범위 확대 및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사업자 의무(안 제44조의7 제1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 중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개인정보 침해 정보”)’로 변경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2).
- 불법정보에 다음의 정보를 추가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4 및 제6호의5 신설).
 -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내용의 정보(“허위조작정보”)
 - 저작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등의 정보(“저작권등 침해 정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이를 알면서 해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 등을 광고하거나 광고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4조의7 제6항).
 - 안 제44조의7 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서비스 등을 광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4조 제3호의2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정보통신망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안 제44조의11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제4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제2항·제3항).

- 안 제44조의11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
제2항 제4호의5).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u>거래하는</u> 내용의 정보	6의2. ----- ----- ----- <u>거래하는 등 개인정보</u> <u>보를 침해하는</u> -----
6의3. (생략) <u><신설></u>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u>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u> <u>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u> <u>조작된 내용의 정보</u>
<u><신설></u>	6의5. <u>저작권 등 「저작권법」</u> <u>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u> <u>해하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u> <u>물을 포함한다) 등의 정보</u>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u>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u>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② ----- ----- <u>제6호의2,</u> <u>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6호의</u> <u>5</u> ----- ----- ----- ----- ----- ----- ----- ----- -----

현행	개정안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u><신설></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누구든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법정보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광고하거나 그 광고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u>제44조의11(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u>
<u><신설></u>	

현행	개정안
	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불법촬영물등은 제외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현행	개정안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4. ~ 7. (생략) ②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략) 4의3. (생략) 4의4. (생략) <신설> ③·④ (생략)	<u>통방지 책임자 지정,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4조(벌칙) ----- ----- ----- -----. 1. ~ 3의2. (생략) <u>3의2.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 서비스 등을 광고한 자</u> 4. ~ 7. (현행과 같음) <삭제>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삭제> 4의4. (현행과 같음) <u>4의5. 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u> ③·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불법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44조의7 제1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제1항 각 호에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를 규정하고,
-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¹⁷⁾.

-
- 1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 개정안은 불법정보에 개인정보 침해 정보, 허위조작정보, 저작권등 침해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인정보 침해 정보와 저작권등 침해 정보의 경우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이미 포함됨.
- 개인정보 침해 행위와 저작권등 침해 행위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관련 정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이미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함.
- 이에 따라 현재도 개인정보 침해 정보 및 저작권등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쳐 삭제 등 차단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인정보 및 저작권등 침해 정보에 대한 방심위 심의·시정요구 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개인정보 침해 정보	3,626	3,624	3,267	3,267	3,632	3,632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2022년		2023년		2024년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저작권등*	7,610	7,529	8,041	7,933	7,210	7,206
침해 정보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둘째,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44조의7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동조 제1항 각 호의 불법정보는 모두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처벌되는 행위에 관한 것임.
- 따라서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대한 처벌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개인정보 침해 정보 및 저작권등 침해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이 불법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동의하는 입장이나,
- ③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정보 조작 목적 및 과실 여부, 구체적 법익 침해에 대한 고려 없이 거짓 또는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등 침해 정보의 경우 현재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침해 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에 이를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함¹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① 개인정보 침해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의 ‘거래’와 ‘침해’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정보를 개인정보를 ‘거래하거나 침해’하는 정보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②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추상적이거나 의미가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③ 저작권등 침해 정보의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로도 유통 제한이 가능하나, 저작권자에 대한 경제적 피해 및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 저해 등 사회적 해악을 감안할 때 저작권등 침해 정보가 불법정보임을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함.

18)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그 정의가 모호하고 정보의 조작 여부를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① 개인정보 침해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태양이 다양하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그 정의가 모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자율규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불법정보 차단조치 미이행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품·서비스 광고 금지(안 제44조의7 제6항)**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업자의 불법정보 차단조치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불법정보 차단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이 없는 일반

이용자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이용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불법정보 차단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이 다수일 수 있고, 이 중에는 불법정보 유통과 무관한 정보통신망도 존재할 수 있는데, 특정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정보통신망에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셋째, 현행법 및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불법정보 차단조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자가 차단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알기 어려워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사업자임을 알면서도 해당 사업자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와 광고 중개업체에게도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상호 협업을 차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동의하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불법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해당 서비스에 광고하거나 중개하는 자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안 제44조의11 제1항 등)

- 개정안은 사업자가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현행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등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이 증가하면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모든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모니터링·심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종류가 다양하고, 어떤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등 경우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불법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그런데 사업자가 불법성이 불분명한 정보까지 직접 판단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로서는 업무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고,

이용자로서는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처리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사업자의 직접 처리 범위를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하고, 사업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연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조치 범위와 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44조의11 제4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⁹⁾.

19)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근거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실태점검과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다양한 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사업자가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사업자가 불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불법정보 유통방지의 경우 개정안의 조치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제44조의7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불법정보의 경우 현행 제44조의7 제2항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나 요청 등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단순 신고만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안 제44조의11 제2항 등)

- 개정안은 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삭제·접속차단 등 불법정보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법은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촬영물등과 불법정보의 범위가 일부 중복되고,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도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비교>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개정안)	청소년 보호 책임자 (현행)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현행)
지정의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상 정보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불법촬영물등 제외)	청소년유해정보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	불법촬영물등
수행 업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 관리, 청소년 보호 계획 수립 등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

- 방송통신위원회는 트래픽 양은 데이터의 크기가 클 경우 이용자가 적어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자가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기준에서 트래픽 양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그 불법성과 피해의 정도가 커 유통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법촬영물등과 달리, 단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4. 권리침해정보의 범위 확대 및 임시조치 의무화 등(안 제44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권리침해정보”)’의 내용에 개인정보 침해 및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4조 제1항 등).
- 권리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근거를 첨부하여 권리침해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안 제44조의2 제1항 및 제4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u>사생활 침해</u>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u>사생활 침해</u> · <u>개인정보 침해</u> · <u>저작권 침해</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u>사생활 침해</u> 또는 명예훼손 등	③ ----- ----- <u>사생활 침해</u> · <u>개인정보 침해</u> · <u>저</u>

현행	개정안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u>작권 침해</u> ----- ----- ----- -----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u>침해나</u>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u>침해사실을 소명하여</u>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	① ----- ----- ----- <u>침해·개인정보</u> <u>침해·저작권 침해나</u> ----- ----- ----- <u>근거를 첨부</u> ----- ----- -----. ----- ----- ----- ----- ----- ----- ----- -----

다. 검토사항

□ 권리침해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44조 등)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권리침해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²⁰⁾,
제44조의2에서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¹⁾.
- 권리침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인격권설)와 정보통신망법상 침해되는 권리를 인격권에 국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견해(재산권포함설)의 대립이 있으나²²⁾,
- 판례는 현행 제44조의 권리침해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이에 준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20)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21)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22) 이창범·황창근·정필운,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p.79

만을 의미할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²³⁾하여
인격권설의 입장으로 보임.

- 개정안은 권리침해정보의 범위에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권리침해정보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구분하여 규제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에 포함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침해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내용규제 체계>

구분	권리침해정보(제44조)	불법정보(제44조의7)
의미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음란정보, 사행성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규제방법	(제44조의2) 권리침해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 (제4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7 제2항·제3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정보 및 저작권등 침해 정보를 권리침해정보에 추가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

23) 대법원 2012.12.4. 결정, 2010마817

당사자가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동의하는 입장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등 침해 정보의 경우 현재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침해 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에 이를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수사기관 등의 판단 없이 사업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워, 임시조치로 인한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므로 권리침해정보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 권리침해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 방법 변경 및 임시조치 의무화
(안 제44조의2 제1항 및 제4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침해 당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권리침해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받은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권리침해 당사자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침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다만 해당 정보가 권리침해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반박내용의 게재 등 임시조치 외의 다른 조치가 권리구제에 보다 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임시조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권리침해 당사자의 요청 요건을 ‘침해사실의 소명’이 아닌 ‘근거자료 첨부’로 완화하는 경우 사업자의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어 현행법과 같은 최소한의 소명 절차는 필요하며,
② 임시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삭제 요청이 있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게 되는 등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① 권리침해 당사자의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근거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타당하지 않은 근거자료를 이용한 요청권 남용이 우려되며,

② 임시조치 의무화 시 권리침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보 게시자의 정당한 의사표시조차 임시조치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①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 근거 첨부만으로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②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5. 서비스 접속 차단 및 과징금(안 제44조의12 등)

가.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음(안 제44조의12 제1항).
 - 제32조의5를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제1호)
 - 제42조의3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제2호)
 - 제4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제3호)
 -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4호)
 - 제44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제5호)
 - 제44조의11 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제6호)
 - 제44조의11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제7호)
 -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제8호)
 - 제64조의5를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제9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접속 차단 조치를 받고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접속 차단 조치를 할 수 있음(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제3항).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
 -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제3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하여 서비스 접속 차단을 명하는 경우(제44조의1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서 그 접속 차단이 해당 정보통신망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조치를 같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4조의13).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1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안 제44조의14).

-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4조의12(접속 차단 조치) ① <u>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u> 1. 제32조의5를 위반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의3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현행	개정안
	3.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7. 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64조의5를 위반하여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접속 차단 조치를 받고 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현행	개정안
<신설>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44조의13(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현행	개정안
	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4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서비스 접속 차단을 명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 차단이 해당 정보통신망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속 차단 조치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동종 유사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현행	개정안
	<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 <u>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u>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u> <u>⑦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u>

현행	개정안
<신 설>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4조의1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1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현행	개정안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서비스 접속 차단(안 제44조의12)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영업정지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과 유사한 성격의 조치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서비스 접속 차단은 일정 기간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해당 조치가 사업자 및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도입 필요성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조치대상이 되는지 가능한 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가령, 개정안 제44조의12 제1항 제3호 및 제6호는 각각 권리침해 정보 및 불법정보의 차단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자도 조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문언만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조치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둘째, 의무를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수일 수 있고, 이 중에는 위반행위와 무관한 서비스도 존재할 수 있는데, 특정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셋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업자의 등록·신고 등 의무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 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넷째,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불법정보 및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심의를 담당함²⁴⁾.

- 따라서 권리침해정보 및 불법정보 차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국내대리인·청소년 보호 책임자·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 관련 위반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 접속 차단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불법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 ① 의도적으로 행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안 제44조의11 제1항 제4호의 위반행위 외에 국내대리인 미지정 등 타 위반행위의 경우 다른 법률과 제재 수준을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 ② 동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무관하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미지정의 경우 현행법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²⁵⁾ 접속차단 조치가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25)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비스 접속 차단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무관하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임시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쇼핑앱, 배달앱 등 커머셜 앱에 이르기까지 접속차단이라는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안 제44조의1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행정청의 즉시강제가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접속 차단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자제되어야 하며, 다른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바로 접속차단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6. 국제협력(안 제62조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함(안 제62조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
- 국외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2조(국제협력)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u>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u>
<신설>	3의3. <u>국외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62조는 정부가 ①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②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③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⁶⁾.
- 개정안은 국제협력 대상에 ④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 ⑤ 국외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업무는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해당 업무에 대한 국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의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해외 서버 기반의 원(原)

26)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정보 삭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 제고 등 국제 협력체계를 통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임.

7. 벌칙(안 제74조 제2호 등)

가. 개정안 요지

- 제44조의7 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4조 제2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안 제75조의2).
 -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73조 제5호)
 - 제44조의7 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제74조 제1항 제2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2. 제44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u>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u>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

다. 검토사항

□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신설(안 제74조 제2호)

- 현행법은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음란정보 및 제3호의 스토킹 정보에 대해서만 해당 정보 유통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각각 현행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개정안은 음란정보 및 스톱킹 정보뿐만 아니라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모든 불법정보에 대하여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규제 체계를 고려할 때,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불법정보는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었다는 이유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예시하여 둔 것임.
 - 가령,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동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함²⁷⁾.

○ 따라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해당 범죄의 근거법률에 의해 처벌되므로 제44조의7 제1항 각 호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불필요하며,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중복적으로 규정될 우려가 있음.

○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음란정보) 음란정보에 대한 처벌규정의 경우,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형법상 음화반포등죄²⁸⁾의 구성요건을 변경한 특별형법에 해당함. 이는 음란한 ‘정보’가 형법상 음화반포등죄의 음란한 ‘물건’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어 음화반포등죄와 별도로 형벌을 규정한 것임²⁹⁾.

- (스토킹 정보) 스톱킹 정보에 대한 처벌규정의 경우, 제44조의7의

2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4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1999.2.24. 선고 98도3140 판결)

불법정보 규정 도입 이전부터 이미 규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스토킹 정보에 대한 처벌규정인 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른 벌칙이 아니라 해당 조문의 근거
조문으로 볼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률에서
범죄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에서 재차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과잉·중복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처벌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위반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몰수·추징(안 제75조의2)

- ‘몰수’란 범죄의 반복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고,
‘추징’이란 몰수하여야 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말함.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차단 명령 위반이나 불법

정보 유통으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정보 유통 또는 유통 방조를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몰수는 징역형,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형의 일종으로,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음³⁰⁾.

○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불법정보 유통 및 유통방조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임의적 몰수를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³¹⁾.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 위원회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실효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입장이나,

30)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31) 다만, 「형법」은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입법례와 같이 개별법상 벌칙으로 규정하여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44조의7 제1항 위반의 경우 불법정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몰수·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2024.10. 기준)

번호	사업자명	국내대리인	번호	사업자명	국내대리인
1	Aceville	텐센트 코리아	21	Match group	제너럴에이전트
2	Adobe	한국어도비시스템즈	22	Meta Platforms	프라이버시에이전트 코리아
3	Agoda	법무법인 케이씨엘	23	Nike	제너럴에이전트
4	Airbnb	에어비앤비코리아	24	Oracle	한국오라클유한회사
5	Apple	애플코리아	25	PayPal	제너럴에이전트
6	Ali express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	26	Roblox	제너럴에이전트
7	Booking.com	법무법인 태평양	27	Skyscanner	법무법인 태평양
8	Dailymotion	법무법인 광장	28	Shein	법무법인 태평양
9	Epic games	에픽게임즈코리아	29	Snap	제너럴에이전트
10	Expedia	법무법인 대륙아주	30	SONY	소니코리아 주식회사
11	Google	주식회사 디에이전트	31	Sony InteractiveEntertainment	(주)소니엔터테인먼트 코리아
12	Hilton	정병혁	32	Sony Music entertainment	소니코리아
13	Hotels combined	법무법인 케이씨엘	33	Supercell	제너럴에이전트
14	Hotels.com	법무법인 대륙아주	34	SPOTIFY AB	법무법인 대륙아주
15	Hyatt hotel	HYGCC KOREA	35	Tiktok	법무법인 태평양
16	Intel	법무법인 화우	36	Trip.com	씨트립코리아
17	LINE	법무법인 태평양	37	Temu	제너럴에이전트
18	Linkedin	제너럴에이전트	38	Tripadvisor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19	Marriott International	법무법인 광장	39	Ubisoft	제너럴에이전트
20	Microsoft	제너럴에이전트	40	Zoom	제너럴에이전트

문 의 처
02)6788-5230